

시론



이창현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변호사

변호사시험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을 풀어주자

로스쿨제도에서는 ‘고시낭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었던 분은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을 시작으로 2012년 사법시험까지 총 678,814명이 출원했으며, 그 중 2.94% 인원인 19,946명이 합격했다. 합격하지 못한 다수는(658,868명) 관악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 주장하면서(Law School 창 2015.7/8, 20면 “로스쿨이 진정 ‘희망의 사다리’”기사 참조)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로 전환하면 고시낭인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고 로스쿨제도의 장점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을 할 무렵인 2015년 6월 관악구에는 약 25만 가구에 512,921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사법시험에 지원하여 1회라도 합격하지 못하면 모두 고시낭인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도 그야말로 완벽한 고시낭인이 되는 것이고, 필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탁상공론이 현재의 로스쿨을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사법시험은 사라지고 법조인은 오로지 변호사시험을 통해서만 배출되도록 변화가 이루어졌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의하면 로스쿨졸업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병역의무 기간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사법시험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이 지나면 위 규정에 따라 고시낭인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기에 로스쿨제도에서는 고시낭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지만 계속해서 ‘고시낭인’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위 규정에 대한 현

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이 났음에도 최근 다시 헌법소원이 청구되고, 병역의무 기간 외에 임신과 출산 등으로 보낸 기간도 반영해 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결정까지 있었다. 이러한 예외가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질병·사고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호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 제5회에서 50명, 제6회에서 71명, 제7회(2018년)에서 88명이 소위 ‘오탈자’가 되어 현재의 규정으로는 영원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게 되었고(한국경제 2018.7.18.자 A28면, “변시 ‘5년 내 5회 응시’제한서 임신·출산은 예외 적용받을까”기사 참조), 이러한 수치는 매년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이 위헌은 아니라고 하여도 오탈자에게 응시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 ‘무능력하고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며 계속 외면만 할 것인가. 이미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를 통해 응시제한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로 무제한 응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3년의 대학원 과정을 졸업해야 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최소 3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다. 인력낭비가 아니라 퇴로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절망인 것이다. 4회째 응시까지 실패하여 변호사시험을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였던 어느 로스쿨졸업생은 ‘변호사자격’이 없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경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방해가 될 뿐이었고, 그 사이에 거의 10년의 공백을 설명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육체노동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탈출구가 있단 말인가?

둘째로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의 저하이다. 초시와 재시의 합격률이 엄청나게 차이나고 오시로 갈수록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져 10%

정도에 불과하므로 오탈자에게 기회를 더 주어도 실질 합격률이 낮아지는 정도는 미미할 것이고, 로스쿨재학생들도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변호사시험의 외관상 합격률을 적정하게 보이기 위하여 오탈자의 간절한 호소를 계속 무시할 것인가?

셋째로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효과를 유지하고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응시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로스쿨의 교육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어서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지금 로스쿨의 교육이 ‘전문적인 교육효과’ 등을 운운한 정도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단 말인가?

끝으로 로스쿨졸업생의 75% 이상이 최종적으로 합격하므로 응시제한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탈자들에게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고 변명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우수한 청년들을 상대로 법학적성시험을 통하여 법학에 적성이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로스쿨에 입학하게 하고 법학교육을 통해 대학원까지 졸업시키고 5년 동안 시험기회를 준 다음에 구제불능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 과연 불가피한 일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들 스스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스쿨과 국가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사실 ‘5년 내 5회 응시’제한은 오탈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로스쿨재학생들에게도 엄청난 공포로 다가온다. 변호사시험을 가히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걱정까지 하게된다. 20여년간 사법시험을 공부하였던 분들도 합격한 후에 법조인생활을 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오탈자에게 평생 응시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에게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주어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정말 좋겠다.